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신탁금 인출 사항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추가〉

■ 배현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095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세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4
3. 관계기관 의견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배현진의원 등 16인
2. 발 의 일 : 2025. 6. 26.
3. 회 부 일 : 2025.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 관리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적으로 맡고 있어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한 상태임.

실제로 최근 수 차례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을 자신의 재산처럼 탕진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음.

반면, 미국, 프랑스 등 해외국의 경우 미성년 연예인 명의의 신탁 계좌에 수익의 일정 부분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금은 미성년 연예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원의 명령 등 긴급상황 시만 예외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

게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소득보호는 물론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이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신탁 계좌의 신탁금 인출에 관한 결정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2호나목11)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가정법원 관장 사항인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類) 사건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신탁 계좌 예치금 인출에 관한 결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나목11)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사비송사건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마류(類) 사건	나.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신탁 계좌 예치금 인출에 관한 결정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배현진위원이 개정안과 함께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94호)에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보수 중 일부를 신탁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안 제25조의2제3항),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안 제25조의2제4항)

개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이 되기 전 예외적으로 법원이 허가하는 신탁금 인출 결정에 관한 사건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하여 해당 사건의 절차를 규율하려는 것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94호)의 해당 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2(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신탁 등) 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할 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명의의 신탁 계좌를 개설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탁 계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에 개설되어야 한다. ③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탁 계

	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자등이 신탁 계좌의 개설 및 정보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수탁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탁 계좌에 입금된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보수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탁 계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비송사건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라기보다 국가가 정책적인 목적에서 후견적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임.¹⁾ 비송사건의 경우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을 행사하고 현재 상황에서 적절하게 법률관계를 형성하며, 그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고 그 심판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나중에 사정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다시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음.²⁾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사비송사건을 살펴보면, 쟁송적 성격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라류 사건³⁾과 비송사건이기는 하지만 대심적 분쟁의 성격을 내재하고 있는 마류 사건으로 나뉨(제2조제1항제2호).

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 비송, 2014 참조.

2) 사법연수원, 가사재판연구, 2017, p.145 참조.

3) 성년후견 개시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등.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구하는 법률관계의 형성, 변경에 관하여 실체법이나 절차법에 상세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라류 가사비송사건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도록 하고(제48조4) 심판의 청구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함(제50조5)).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신탁 계좌의 신탁금 인출에 관한 사건을,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쟁송적인 성격을 가짐에 따라 당사자 심문의 원칙과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신탁 계좌의 신탁금 인출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함께 발의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94호)과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4) 「가사소송법」 제48조(심리방법)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5)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나, 미성년자 본인 명의 재산 처분에 대해 가정법원이 후견적 허가를 내리도록 하는 재판을, 대심적 성질을 가지지 않고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되며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법원행정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1094호)의 경우 오히려 미성년자 보호에 미흡할 우려 등이 있고, 해당 법안의 문제점이 보완되더라도 신탁 계좌 예치금 인출에 관한 결정을 대심적 구조의 비송사건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61